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6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김성원 · 고동진 · 박성훈
김용태 · 김종양 · 박충권
이인선 · 김선교 · 정동만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 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회”를 “4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u>20</u>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① ----- ----- ----- ----- <u>30</u> <u>일</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u>3회</u>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 <u>4회</u>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